

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 입찰 공고

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(하동군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내 드론비행 실습장)의 사용·수익허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7. 25.

하 동 군 수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- 입찰명 :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내 드론비행 실습장 사용·수익허가
- 입찰내용 및 대부조건

임대시설명	용도	대부면적 (m ²)	소재지	예정가격 (1년간 사용료)	사용허가 기간	비고
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내 드론비행 실습장	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전문드론 교육원 비행실습장	드론실습비행장 (토지) 3,094m ²	경남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1484-2 일원	7,057,030원 (부가세 포함)	사용허가일로 부터 1년	

※ 예정가격은 2024년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차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재산정됩니다.

입찰방법

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,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(이하 “온비드” 라 함, <http://www.onbid.co.kr>)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.

2.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

-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기간 : 2024. 07. 26.(금) 09:00 ~ 8. 9.(금) 16:00
- 제출처 : 온비드(<http://www.onbid.co.kr>)

3. 낙찰자 선정(개찰) 일시 및 장소

○ 2024. 8. 12.(월), 10:30 하동군 투자유치과 입찰집행관PC

4. 입찰참가자의 자격

- 가.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이 정하는 사용허가 조건을 수락한 자
- 나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(입찰 참가자격) 및 제9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
- 다. 지역 및 자격 제한 요건
 - 지역제한 : 하동군 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자
 - 제한요건 : 드론법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로서 낙찰 후 6개월 이내 드론전문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
- 라. 동일 세대 및 가족관계 내에서는 1명만 입찰 참가 가능
- 마.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직영할 수 있는 자(전대시 허가취소)
- 바.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업 신고를 득할 수 있는 자

5. 입찰참가 방법

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,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(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)로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.

6. 입찰서의 제출

- 가.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,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나. 입찰서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다.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시간 및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라.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,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, 또한 동일한 입찰자가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.

7. 입찰보증금 납부

- 가. 입찰보증금은 **입찰금액의 5/100이상**에 해당하는(부족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)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“온비드” 입찰 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,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.

- 나. 입찰보증금을 입찰접수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,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.

8. 입찰보증금의 처리

- 가.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하동군 계좌로 이체되며,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이체 되고,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 합니다.
- 나.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 다운, 시스템이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,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번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, 이로 인하여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는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됩니다.
- 다. 낙찰자가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입찰보증금은 군금고에 귀속되며,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9. 낙찰자 결정방법

- 가. 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1명 이상 있는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.
- 나.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로 하며, 최고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
- 다.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여부 확인은 입찰자 본인의 책임 사항입니다.

10.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

- 가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하며,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에 해당하는 자 또는 온비드 회원약관 및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또한 무효로 합니다.
- 나. 공개한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.
- 다. 신청자격이 없거나, 서류미비,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낙찰 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되며, 또한 계약 체결 후에도 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일방 해약하고 사용료는 우리군에 귀속 조치합니다.

12.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

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, 전자입찰관련법령, 입찰 공고사항,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규칙,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, 신청서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
13.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

- 가.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,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하동군에 귀속됩니다.
- 나. 낙찰자는 계약과 동시에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합니다.

14. 행정재산 사용·수익에 관한 사항

- 가. 본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·수익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합니다.
- 나. 본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하여 매년 납부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선납을 하여야 합니다.

15. 기타사항

- 가.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나. 본 사용허가재산은 공부상 표시된 기준으로 하며 이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응찰자는 입찰 전에 필히 현장을 답사하시기 바라며, 입찰참가자는 드론전문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·허가 등 가능 여부 및 제반사항 등을 철저히 숙지한 후 응찰하시고, 군은 입찰에 참가한 자는 사용허가 입찰공고와 관련한 제반사항 등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,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다.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,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법규 및 우리군에서 정한 제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라. 기타 온비드 사용에 대한 문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센터(☎ 1588-5321)로, 임대 재산 및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하동군 투자유치과(☎055-880-264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하동군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내 「드론비행실습장」 사용허가 조건 “안” 1부. 끝.

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내 「드론비행실습장」 사용허가 조건 “안”

【재산의 표시】

- 소재지 :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1484-2 일원
- 시설명 : 하동군 해양플랜트연구단지 지내
- 시설규모 : (토지) 3,094㎡(드론비행실습장)

제1조(사용목적)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목적은 4차산업의 선두주자인 드론산업의 발전과 군민들의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의 교육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사용허가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 중 “갑”이라 함은 “하동군”을 말하고 “을”이라 함은 “OOO”를 말한다.

제3조(사용허가 기간)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

제4조(사용개시일) 사용개시일은 사용허가일로 본다.

제5조(신고 등의 이행) ① “을”은 사용허가 승인 후 즉시 운영에 필요한 신고 허가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“을(낙찰자)”과 사업자 등록상의 대표자 명의가 동일해야 한다.

제6조(사용료) ① 첫째 연도 사용료는 낙찰 금액으로 한다.(부가가치세 포함) 다만,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.

② 1차년도 이후 및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31조, 제31조의 2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선납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14조에 따라 정하는 기간 내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. 다만,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동시행령 동조항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10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“하동군”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1년마다 체결하

여 사용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“갑”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사용료 납부) ① “을”의 사용료 납부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제14조제7항에 의거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.

② 사용료는 군에서 발행한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“을”은 사용허가조건 제6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최초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, 잔여 사용료는 매 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운영시간) 운영시간은 “갑” 과 “을”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호이견이 있을 경우 “갑(허가권자)”의 의견을 우선한다.

제9조(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) 사용료를 분할납부할 경우 “을”은 다음 조건의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“을”은 사용허가 후 15일 이내에 사용료, 관리비,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와 원상회복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하동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체결(보증비율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.)하여 “갑”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, 이때 보증기간은 사용허가일을 시작일로 하여 1차 연도 및 갱신 사용허가 기간 각각 끝나는 날에서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.

※ **이행보증보험증권 조건**

1. 보증기간: 최초(계약기간 + 60일), 2차 연도 이후(잔여계약기간 + 60일)
2. 보증금액: 최초(낙찰금액의 50%), 2차 연도 이후(해당 사용료 총금액의 50%)
3. 보증내용: 하동군에 대한 채무(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, 관리비,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 및 원상복구) 지급보증
4. 피보험자: 하 동 군

제10조(손해보험증서의 제출) ① “을”은 사용허가 후 15일 이내에 사용허가재산의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보험(화재보험) 증서와 드론교육장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하동군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하동군이 해당 사용허가 대상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「[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](#)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“을(사용인)”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이 본 사용허가조건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“을”이 손해배상 및 민·형사상 책임을 진다.

제11조(사용허가재산의 보존 및 유지관리 책임) ① “을”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허가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운영하고 보존할 책임을 지며,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고 그 비용부담을 진다. 또한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그 비용 부담은 물론 「[민법](#)」 제203조([점유자의 상환청구권](#)) 또는 [동법](#) 제626조([임차인의 상환청구권](#)) 등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다.

② “을”은 사용허가재산 일체에 대하여 보수유지관리에 책임을 지고, 시설물 설치 시에는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 훼손할 수 없으며 또한 본래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을 설치할 경우 “갑”의 승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은 “갑”에게 무상 기부채납된 것으로 한다.

③ “을”은 주변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사용허가재산 내·외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, 시설물 내 공용 부분(복도, 화장실 등)의 경우 다른 사용자와 협의하여 청결 및 위생 관리(청소, 분리수거 등)를 하여야 한다.

④ “을”은 시설 구역 내에서의 개인 또는 단체, 공공기관의 정당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.

⑤ 소규모 수리·수선 등 시설보수에 대한 비용은 “을”이 부담한다. 다만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, 시설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(「[건축법](#)」상 대수선 및 보일러, 엘리베이터 설치 또는 교체 등) 대한 비용은 “갑”이 부담한다.

제12조(사용인의 행위제한) “을”은 “갑”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.

- ① 사용목적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
- ②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영업을 하는 것
-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

제13조(사용허가의 취소)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“갑”은 사용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- ①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
- ② “을”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법령 또는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
- ③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
- ④ 사용허가 즉시 “을”이 30일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않거나, 사용허가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
- ⑤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연 3회 이상의 독촉을 받고도 계속 체납하였을 때
- ⑥ “을”이 민·형사상 문제로 사용허가시설을 관리함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14조(사용료의 반환) “을”이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[사용허가조건 제13조제1호](#)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 [사용허가조건 제6조](#)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를 반환한다. 다만, 「[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](#)」[제82조](#)의한 가산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.

제15조(재산권) “을”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이나 재산권도 주장할 수 없다.

제16조(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) “을”이 관련 법령 또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

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“을”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“갑”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.

제17조(사용허가 취소 요청) “을”이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8조(사용재산의 반환)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“을”은 “갑”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재산을 원상회복하여 “갑”의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하며, [사용허가조건 제11조제2항](#)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시설은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9조(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) “을”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“갑”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“갑”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“을”이 부담하여야 한다.

제20조(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)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[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81조](#)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.

제21조(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) “을”은 본 허가조건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“갑”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“을”은 그 배상의 전액을 책임진다.

제22조(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) ① “을”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관리상 소요되는 시설물 유지 관리비 및 공과금 등 일체의 부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부과금에 대한 고지서 명의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“을”의 명의로 분리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과금 산정 및 납부방법은 “갑”이 정할 수 있다.

② “을”은 공과금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플랜트연구단지 내 기존 사용자(입주 업체 등)와 공과금 납부 방법을 정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.

제23조(사용자의 책임과 의무) ① 드론 교육생 및 이용객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용객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거절해서는 안된다.

- ③ 사용허가재산의 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④ “을”은 매분기 개시 10일 이내에 수입·지출 등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“을”은 사용허가 신청 시에 공유재산 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, 당초 사용계획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.

제24조(안전) ① “을”은 제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, 만약 “을”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재, 도난, 건물파손, 기타 사고에 대하여는 “을”이 책임을 진다.

- ② “을”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.
- ③ “을”은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을 하동군에 제출하고 안전·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- ④ “을”은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개선 조치를 하고, 하동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- ⑤ “을”은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⑥ “을”은 사용허가 허가 후 15일 이내에 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”를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5조(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운영에 따른 이의제기 금지) “을”은 하동군 해양플랜트연구단지 특성상 화재폭발 시험등 연구활동 및 하동군에서 운영하는 교육 등으로 드론교육의 일정이 변경되는 등 드론교육원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.

제26조(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) “을”은 본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, 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을 위하여 “갑”이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27조(관할법원) 본 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사용허가 재산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28조(송달) ①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문서를 송달할 때, 우편,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,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.

② “을”이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지정하여 기재한 경우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③ “을”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자명·주소·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되었을때는 즉시 “갑”에게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.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“갑”은 책임지지 않는다.

제29조(어구의 해석) 이 허가조건에 관하여 쌍방간 이의가 있을 때에는 “갑”의 결정에 의한다.

제30조(관계법규의 준용)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, 동법 시행령,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, 국유재산관련법령 등 개별 관련법규를 준용한다.

2024년 월 일

위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승낙함

- 성 명 : (인)
- 주 소 :
- 주민등록번호 :
- 전자우편주소 :
- 전 화 번 호 :
- 사업장상호명 :
- 사업자등록번호 :
- 사업장소재지 :

하동군수 귀하

[별지 제20호서식]

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

- 재산의 표시
 - 소재지
 - 지목(구조)
 - 면적(건물면적)

- 대부(사용)기간

- 대부(사용)목적

- 대부(사용)료 :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

- 대부(사용)조건 :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

위와 같이 대부(사용허가)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주 소

생년월일

성 명

(인)

하동군수 귀하